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52조 관련)

1. 수입조사료에 대한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는 다음 각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컨테이너로 수입된 조사료의 현물검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컨테이너 검사수량			
컨테이너수	1~4	5~9	10~19	20이상
검사수량	1이상	2이상	4이상	5이상
추출검사	선정된 컨테이너 중 2~5 Bale을 해체하여 검사			

나. 톤백으로 수입된 조사료의 현물검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톤백 검사수량			
톤백수	1~9	10~19	20~39	40이상
검사수량	1이상	2이상	4이상	5이상
추출검사	선정된 톤백 중 2 Bale 이상 추출하여 해체 검사			

다. 열처리된 수입조사료를 컨테이너로 수입시에는 가목의 검사요령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포장형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현물검사 조건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판단하여 실시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국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입조사료에 대한 현물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물검사 수량을 늘려 실시할 수 있다.

마. 현물검사시 수입조사료 성상이 이상하거나 최초로 수입되는 작업장 및 불합격 이력이 있는 작업장산 조사료의 경우에는 선정된 컨테이너 또는 톤백에 대하여 전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수입조사료의 정밀검사용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채취대상: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대상국산 수입조사료
- 2) 검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
- 3) 시 료 량: 1kg
- 4) 채취기준: 조사료 소독실시전 시료 채취

2. 포르말린 훈증방법으로 소독하여 수입된 조사료는 컨테이너 또는 톤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 소독종류별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열처리된 수입조사료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조사료의 현물검사 결과에 따른 불합격 기준과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합격 기준	조치기준	비고
봉인탈락	해당 컨테이너	
톤백 파손	톤백	
이물(분변 및 분비물 등)	LOT 전체	B/L단위